연천군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일부개정예 규안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.

# 연 천 군 의 회 의 장 김 미 경 2024년 9월 23일

연천군의회 예규 제6호

## 연천군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일부개정예규안

#### 1. 개정이유

○ 국민권익위원회 개선권고안을 반영하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을 정비하려는 것임.

#### 2. 주요내용

- 가.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항을 정비(안 제 4조)
- 나.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·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비(안 제5조)
- 다. 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신설(안 제6조의2)
- 라.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·수익 금지에 관한 사항을 신설(안

제8조의2)

- 마.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에 관한 사항을 신설(안 제9조의2)
- 바. 위법한 직무처리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항을 신설(안 제12조의2)
- 사. 부당이득의 환수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(안 제12조의3)
- 아. 이해충돌방지 자문기구의 구성·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(안 제19조)
- 자. 과태료에 관한 사항을 신설(안 제20조)
- 3. 개정 조례안 : 붙 임(신·구조문대비표)

#### 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 「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」(국민권익위 원회예규 제320호)
- 나. 예산조치: 해당없음
- 다. 그 밖의 사항: 해당없음

# 연천군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일부개정예규안

연천군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6항(종전의 제5항) 전단 중 "제5호"를 "별지 제5호"로 하며, 같은 항 후단 중 "제4항"을 "제5항"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④ 담당관은 신고·회피 신청을 한 공직자 및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공직자가 의장인 경우, 부의장(부의장이 없는 경우 이에 상당하는 자를 포함한다)의 의견을 들어 법 제7조에 따른 조치의 내용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의장에게 통보해야 한다.
- ⑤ 담당관이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조치를 통보한 경우, 담당관 또는 다른 공직자는 신고·신청을 한 공직자 및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공직자에 대해 해당 직무수행이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를 별지 제4호의2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확인·점검해야 한다.
- ⑥ 연천군의회 소속 공직자는 직무관련자(직무관련자의 대리인을 포

함한다)가 사적이해관계자가 아닌 경우에도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스스로 판단하여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조치를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을 작성하여 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. 이 경우 신청을 위한 조치와 관련하여서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.

⑦ 법 제16조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의 경우 제4조 및 제5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.

제5조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고위공직자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민간 부문 업무활동을 한 내역이 없는 경우 별지 제6호의2 서식을 작성하여 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.
- ③ 의장(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해야 하는 사람이 의장인 경우에는 담당관을 말한다)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내역을 고위공직자의 겸직신고 사항, 선거공보, 기타 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업무활동을 알 수 있는 자료와 비교하여 누락된 사항이 있거나 구체적이지 않은 경우, 해당 고위공직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.

제6조제2항 중 "제5조제1항부터 제4항"을 "제4조제1항부터 제5항"으로 한다.

제6조의2, 제8조의2, 제9조의2, 제12조의2, 제12조의3, 제19조 및 제20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6조의2(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) ① 공직자는 법 제10조제2호, 제4호, 제5호 단서에 따라 의장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해당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별지 제7호의2 서식을 작성하여 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가 학술·연구활동으로서 법 제10조제2호의 활동을 하는 경우, 해당 기관은 별지 제7호의2 및 제7호의3 서식을 참고하여 허가 절차를 정할 수 있다.
  - 1. 「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
  - 2. 「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
  - 3. 「고등교육법」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·공립대학
  - 4. 「국립대학교병원 설치법」에 따른 국립대학교병원
  - 5. 「국립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」에 따른 국립대학교치과병원
  - 6. 「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」에 따른 서울대학교병원
  - 7. 「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」에 따른 서울대학교치과병원
  - 8. 「광주과학기술원법」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, 「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」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, 「울산과학기술원법」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, 「한국과학기술원법」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
  - ② 제1항의 허가 신청을 받은 담당관은 허가 신청을 한 공직자를 지휘 · 감독하는 상급자 또는 의장의 의견을 들어 공직자의 직무수행에 지

장이 있는지를 판단하고 별지 제7호의3 서식에 따라 통보한다.

- ③ 담당관은 허가 신청을 한 공직자가 의장인 경우, 부의장의 의견을 들어 공직자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는지를 판단하고 별지 제7호의3 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통보한다.
- 제8조의2(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・수익 금지) 연천군의회 소속 공직자는 법 제13조에 따라 공공기관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물품・차 량・선박・항공기・건물・시설 등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・수익하거 나 제3자로 하여금 사용・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다른 법 령・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 다.
- 제9조의2(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) ① 공직자(공직자가 아니게 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을 포함하되, 다른 법률에서 이와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서 규정한 바에 따른다. 이하 이조에서 같다)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정보(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 여부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.
  - ②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공직자로부터 직무상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정보임을 알면서도 제공받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

자는 이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 다.

- ③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공직자는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정보를 사적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제12조의2(위법한 직무처리에 대한 조치) 의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공직자가 법 제5조제1항, 제6조, 제8조제1항·제2항, 제9조제1항·제2항, 제10조, 제11조제3항, 제12조제2항, 제13조, 제14조 또는 제15조를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해당 공직자에게 위반사실을 즉시 시정할 것을 명하고 계속 불이행할 경우 해당 공직자의 직무를 중지하거나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- 제12조의3(부당이득의 환수 등) ① 의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공직자가 법 제5조의 신고 및 회피 의무 또는 법 제6조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여 수행한 직무가 위법한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 직무를 통하여 공직자 또는 제3자가 얻은 재산상 이익을 환수하여야 한다.
  - ② 의장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공직자가 법 제13조의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·수익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공직자 또는 제3자가 얻은 재산상 이익을 환수하여야 한다.
  - ③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률에서 공직자 또는 제3자가 얻은 부당이득의 몰수, 환수 등에 대하여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 따른다.

- 제19조(이해충돌방지 자문기구의 구성·운영) ① 의장은 영 제32조제1 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담당관을 장 으로 하는 이해충돌방지 자문기구(이하 "자문기구"라 한다)를 구성해 운영할 수 있다.
  - ② 자문기구는 담당관을 포함하여 3인 이상으로 구성하고, 구성원은 부패방지 업무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.
  - ③ 자문기구 구성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1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  - ④ 자문기구의 회의는 담당관이 소집하고, 관계인은 자문기구의 요청에 따라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.
  - ⑤ 자문기구의 구성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,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
  - ⑥ 자문기구의 구성원은 법 제16조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으로서 공무수행과 관련한 행위제한을 준수해야 한다.
- 제20조(과태료) 의장은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법 제28조제1항부터 제3 항까지의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하여는 그 위반 사실을 「비송사건 절차법」에 따른 과태료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.

별표 중 "(제20조 관련)"을 "(제18조 관련)"으로 한다.

별지 제4호의2서식, 별지 제6호의2서식, 별지 제7호의2서식 및 별지 제7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## 부 칙

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관부서		의회사무과		
	과장	의회사무과장		
입	성명	김 유 미		
	팀장	의정팀장		
안	성명	임 학 현		
자	담당자	이 상 은		
	성명·전화	(031-839-2527)		

##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등에 대한 공정한 직무수행 확인 점검서

• [ ]에는 해당하	]에는 해당하는 곳에 √ 표시를 합니다.			(앞 쪽)
① 신고·	성명	소속	직위(직급)	
신청인 등				
신고 유형	[ ]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[ ]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[ ]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			
확인·점검자	성명	소속	직위(직급)	
② 확인·점검 내용				
③ 확인·점검 결과	[ ] 특이사항 없음			
	후속 조치 내용 :			
			년	월 일
		확인·점검자		(서명 또는 인)

# 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없음 확인서 서명 소속 지위(직급) 임용일(임기 개시일)

본인은 위 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하기 전 3년 이내에 민간 부문에서 업무활동을 한 내역이 없음을 확인합니다.

년 월 일

○○기관장 귀중

제출인

(서명 또는 인)

### 직무 관련 외부활동 허가 신청서

(앞 쪽)

접수번호		접수일		처리	일		<u> </u>
신고인	성명	_	소속 		직위(직급	<del>}</del> )	
① 요청인	기관명	C	담당자		연락처		
② 외부활동 유형	[ ] 소속 공공기관의 탁금지법」제10 [ ] 외국의 기관·법인	조에 따른 오 I·단체 등을 C	기부강의 등 대기 대리하는 행위	나 정보를 타인에 가로서 사례금 수			, -
	③ 외부활동 주제         ④ 외부활동 방법         ⑤ 외부활동 일시			⑥ 일괄신고			
외부활동 내용	20 ⑦ 사례금 총액 [교통비·숙박비·식비(	천원 (※	1회 평균 대기	연간 총 <u>현</u>	횟수 : <u>횟수 :</u> '원) 통비·숙박'	회	천원)

「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」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직무 관련 외부활동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

(서명 또는 인)

#### 작성방법

- ※ 본 "직무 관련 외부활동 허가 신청서"는「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」제10조에 따른 외부강의등의 대가로서 사례금 수수가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항은 작성하지 않습니다.
- ① "요청인"은 1)공직자에게 지식이나 정보 제공을 요청하고 대가를 지급한 주체 2)공직자가 대리하는 외국의 기관·법인·단체 3)공 직자가 취임하려고 하는 직위가 속한 기관을 말합니다.
- ② "외부활동 유형"은 공직자가 직무 관련 외부활동으로서 소속기관장의 허가를 받으려고 하는 법 제10조제2호, 제4호, 제5호 중 유형에 체크 표시 합니다.
- ③ "외부활동 주체"는 공직자가 ①에서 선택한 외부활동 유형과 관련한 구체적인 활동 내용을 간략하게 적습니다.
  - (예) 1) ㅇㅇ언론사 요청으로 ㅇㅇㅇ정책 효과에 대한 자문
    - 2) ㅇㅇ법인을 대리해 ㅇㅇ에 관한 소송 수행
    - 3) ㅇㅇ단체의 단체장으로 취임
- ④ "외부활동 방법"은 공직자가 ③에서 작성한 활동을 수행하는 구체적 방법을 간략하게 적습니다.
  - (예) 1) 서면 자문, 유선 자문 등
    - 2) 관련 자료 제공, 재판 출석 등
    - 3) 단체장으로서의 제반 활동 수행
- ⑤ "외부활동 일시"는 공직자가 ③에서 작성한 활동을 수행하는 일시를 적습니다.
  - (예) 1) 자문 기간
    - 2) 대리 기간
    - 3) 취임 기간
- ⑥ "일괄신고"는 공직자가 ③에서 작성한 활동을 연간 정기적으로 수행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.
  - (예) ㅇㅇ법인에 월 평균 2회씩 1년간 ㅇㅇ기술 관련 자문을 하는 경우, 연간 총 24회, 월 평균 2회로 작성
- ⑦ "사례금"은 공직자가 ③에서 작성한 활동을 수행하고 지급받은 대가를 작성합니다. 이 때, 대가 총액은 교통비·숙박비·식비를 제외한 대가 총액을 기재하고 교통비·숙박비·식비는 []속에 별도 기재합니다.

#### 직무 관련 외부활동 허가 통보서

• [ ]에는 해당하는 곳에 √ 표시를 합니다. 접수번호 통보일 성명 직위(직급) 소속 신청인 [ ] 소속 공공기관의 소관 직무와 관련된 지식이나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(「청 탁금지법 제10조에 따른 외부강의 등 대가로서 사례금 수수가 허용된 경우는 제외) ① 외부활동 유형 [ ] 외국의 기관·법인·단체 등을 대리하는 행위 ]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 [ ] 허가 [ ]불허가 ② 결과 \* 허가하지 않는 사유: 기타 참고사항 「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」제10조에 따라 직무 관련 외부활동 허가 신청에 대한 결과를 위와 같이 통 보합니다. 일 년 ○○기관장 (서명 또는 인)

#### 작성방법

- ① "외부활동 유형"은 공직자가 직무 관련 외부활동으로서 소속기관장의 허가를 받으려고 하는 법 제10조제2호, 제4호, 제5호 중 유형에 체크 표시 합니다.
- ③ "결과"는 허가 또는 불허가를 선택하여 표시하고, 불허가하는 경우, 그 사유를 간략하게 적습니다.
  - (예) 공직자가 신청한 외부활동은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에 지장을 줄 것이라 판단됨

#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	
제4조(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	제4조(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			
에 대한 조치) ① ~ ③ (생 략)	에 대한 조치) ① ~ ③ (현행과			
	같음)			
④ 담당관은 제3항에 따라 통보	④ 담당관은 신고·회피 신청을			
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한 조	한 공직자 및 기피 신청의 대상			
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	이 된 공직자가 의장인 경우, 부			
•점검해야 한다.	의장(부의장이 없는 경우 이에			
	<u>상당하는 자를 포함한다)의 의</u>			
	견을 들어 법 제7조에 따른 조			
	치의 내용을 별지 제4호 서식에			
	따른 서면으로 의장에게 통보해			
	<u>야 한다.</u>			
<u>&lt;신 설&gt;</u>	⑤ 담당관이 법 제7조제2항에			
	따른 조치를 통보한 경우, 담당			
	<u>관 또는 다른 공직자는 신고·신</u>			
	청을 한 공직자 및 기피 신청의			
	대상이 된 공직자에 대해 해당			
	직무수행이 완료된 날부터 30일			
	이내에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를			
	별지 제4호의2 서식에 따른 서			
	<u>면으로 확인·점검해야 한다.</u>			
⑤ 연천군의회 소속 공직자는	⑥ 연천군의회 소속 공직자는			
직무관련자(직무관련자의 대리	직무관련자(직무관련자의 대리			
인을 포함한다)가 사적이해관계	인을 포함한다)가 사적이해관계			
<u>자가 아닌 경우에도 공정한 직</u>	<u>자가 아닌 경우에도 공정한 직</u>			

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모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고 스스로 판단하여 법 제7조제 1항 각 호의 조치를 신청하는 경우 제5호 서식을 작성하여 담 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 다. 이 경우 신청을 위한 조치와 관련하여서는

<u><신</u>설>

제5조(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 | 제5조(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 활동 내역 제출·관리) ① (생 략)

<신 설>

<신 설>

고 스스로 판단하여 법 제7조제 1항 각 호의 조치를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을 작성하 여 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야 한다. 이 경우 신청을 위한 조치와 관련하여서는 제1항부 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.

⑦ 법 제16조에 따른 공무수행 사인의 경우 제4조 및 제5조제1 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.

활동 내역 제출·관리) ① (현 행과 같음)

② 고위공직자는 법 제8조제1항 에 따라 민간 부문 업무활동을 한 내역이 없는 경우 별지 제6 호의2 서식을 작성하여 담당관 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 다.

③ 의장(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 역을 제출해야 하는 사람이 의 장인 경우에는 담당관을 말한 다)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내역을 고위공직자의 겸직신고 사항, 선거공보, 기타 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 업무활 ② (생 략)

및 조치) ① (생 략)

②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② ------경우 신고 사항에 대한 조치에 관하여 제5조제1항부터 제4항 까지를 준용한다.

<신 설>

동을 알 수 있는 자료와 비교하 여 누락된 사항이 있거나 구체 적이지 않은 경우, 해당 고위공 직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 다.

④ (현행 제2항과 같음)

제6조(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제6조(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및 조치) ① (현행과 같음)

---- 제4조제1항부터 제5항--

제6조의2(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) ① 공직자는 법 제10조제 2호, 제4호, 제5호 단서에 따라 의장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해당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별 지 제7호의2 서식을 작성하여 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공공 기관 소속 공직자가 학술·연구 활동으로서 법 제10조제2호의 활동을 하는 경우, 해당 기관은 별지 제7호의2 및 제7호의3 서 식을 참고하여 허가 절차를 정 할 수 있다.

1. 「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

- 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 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과학 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
- 2. 「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
- 3. 「고등교육법」 또는 그 밖 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·공립대학
- 4. 「국립대학교병원 설치법」 에 따른 국립대학교병원
- 5. 「국립대학교치과병원 설치 법」에 따른 국립대학교치과 병원
- 6. 「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」 에 따른 서울대학교병원
- 7. 「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 법」에 따른 서울대학교치과 병원
- 8. 「광주과학기술원법」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, 「대구경 북과학기술원법」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, 「울산과학기술원법」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, 「한국과학기술원법」에 따른 항국과학기술원법」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

<신 설>

② 제1항의 허가 신청을 받은 담당관은 허가 신청을 한 공직 자를 지휘·감독하는 상급자 또 는 의장의 의견을 들어 공직자 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는지를 판단하고 별지 제7호의3 서식에 따라 통보한다.

③ 담당관은 허가 신청을 한 공 직자가 의장인 경우, 부의장의 의견을 들어 공직자의 직무수행 에 지장이 있는지를 판단하고 별지 제7호의3 서식에 따라 의 장에게 통보한다.

제8조의2(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 적 사용·수익 금지) ① 연천군 의회 소속 공직자는 법 제13조 에 따라 공공기관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물품·차량·선박·항공기· 건물·시설 등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·수익하거나 제3자로 하여 금 사용·수익하게 하여서는 아 니 된다. 다만, 다른 법령·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 ② 의장은 기관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물품·차량·선박·항공기· 건물·토지·시설 등의 사용에 대 <신 설>

해 법령·기준으로 정하여 관리 한다.

제9조의2(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 지) ① 공직자(공직자가 아니게 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 한 사람을 포함하되, 다른 법률 에서 이와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서 규정한 바에 따른다. 이하 이 조에서 같 다)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정보(재 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 여 부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 칠 수 있는 정보로서 불특정 다 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 서 같다)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 3자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 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②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공직 자로부터 직무상 비밀 또는 소 속 공공기관의 미공개정보임을 알면서도 제공받거나 부정한 방 법으로 취득한 자는 이를 이용 <u><신</u>설>

<신 설>

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.
③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공직자는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정

보를 사적 이익을 위하여 이용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하

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12조의2(위법한 직무처리에 대한 조치) 의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공직자가 법 제5조제1항, 제6조, 제8조제1항·제2항, 제9조 제1항·제2항, 제10조, 제11조제3항, 제12조제2항, 제13조, 제14조 또는 제15조를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해당 공직자에게 위반사실을 즉시 시정할 것을 명하고 계속 불이행할 경우 해당 공직자의 직무를 중지하거나 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제12조의3(부당이득의 환수 등)
① 의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공직자가 법 제5조의 신고 및 회피 의무 또는 법 제6조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여 수행한 직무가 위법한 것으로 확정된

<신 설>

경우에는 그 직무를 통하여 공 직자 또는 제3자가 얻은 재산상 이익을 환수하여야 한다.

② 의장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공직자가 법 제13조의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·수익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공직자 또는 제3자가 얻은 재산상 이익을 환수하여야 한다.

③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제1 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 른 법률에서 공직자 또는 제3자 가 얻은 부당이득의 몰수, 환수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경 우에는 그 법률에 따른다.

제19조(이해충돌방지 자문기구의 구성·운영) ① 의장은 영 제32 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해 필요한 경 우 담당관을 장으로 하는 이해 충돌방지 자문기구(이하 "자문 기구"라 한다)를 구성해 운영할 수 있다.

② 자문기구는 담당관을 포함하여 3인 이상으로 구성하고, 구성원은 부패방지 업무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
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.

③ 자문기구 구성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1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
④ 자문기구의 회의는 담당관이 소집하고, 관계인은 자문기구의 요청에 따라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자료를 제출 할 수 있다.

⑤ 자문기구의 구성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, 여비 및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있다.

⑥ 자문기구의 구성원은 법 제1 6조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으로 서 공무수행과 관련한 행위제한 을 준수해야 한다.

제20조(과태료) 의장은 법 제28조 제4항에 따라 법 제28조제1항부 터 제3항까지의 과태료 부과 대 상자에 대하여는 그 위반 사실 을 「비송사건절차법」에 따른 과태료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하 여야 한다.

<신 설>